

## 광명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

제정	1981.	7.	1	조례 제 10호
개정	1982.	4.	26	조례 제 147호
	1988.	5.	3	조례 제 478호
	1989.	3.	23	조례 제 531호
	2008.	6.	16	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일부개정	2015.	11.	5	조례 제2133호
일부개정	2018.	7.	31	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시 또는 광명시장(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금 지급대상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. 다만,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1. 시가 원고인 경우: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
2.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: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

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<개정 2018. 7. 31>

제3조(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)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제4조(포상금 지급기준) ① 광명시 또는 광명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. 다만,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.

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1. 소취하(쌍방취하 포함)된 경우
2.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

제5조(포상금 지급액)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6. 16, 2015. 11. 5, 2018. 7. 31>

1. 행정소송(본안) 사건당 300,000원 이내
2. 민사소송(본안) 사건당 300,000원 이내, 「소액사건심판법」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사건당 100,000원 이내
3. 신청사건(행정, 민사소송)의 사건 당 100,000원 이내

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31>

제6조(표창)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부칙

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2. 4. 2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8. 5. 3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9. 3. 23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11. 5 조례 제2133호>
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